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중소기업부장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I.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중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으로 한정한다.

나. 영 제4조의4 각호에 따른 방역조치(이하 “방역조치”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2022년 4월 1일부터 동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행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달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2. 대상자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로 본다.

3. 폐업한 대상자는 폐업일 전날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III. 보상금의 산정

1. 손실보상금은 다음 항목을 모두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IV.에 따른 확인보상 신청 또는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재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액으로 한다.

가. 2022년 4월 1일부터 동년 4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발생한 월별 일평균 손실액

나. 2022년 4월 1일부터 동년 4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일수(日數)

다. 보정률

<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인프라 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1) “인프라매출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할 수 있다.
- (2) “신고매출액”이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상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3) 연도별 현금매출보정비율(인프라매출액 대비 신고매출액 비중)을 활용하여 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매출액을 보상금 산정 시 반영한다.
- (4) 폐업한 대상자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해당자가 폐업일 전날까지 영업한 일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 (5) 인프라매출액이 없어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1)부터 다.(5)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한다.
- (6) 2022년 4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한정하여 산정하며, 지역·시설 평균값 등을 활용하여 17일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한다.

(7) 월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손실액은 위 (5)에 따라 산정한다.

나.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영 제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는 과세자료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른 경비율 고시,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서비스업조사」(승인통계 제101027호)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 (1) 사업 개시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과세기간이 2019년인 과세자료
- (2) 사업 개시일이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과세기간이 2020년인 과세자료
- (3) 사업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 과세기간이 2021년인 과세자료
- (4) 사업 개시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 이전인 사업자가거나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자료가 없는 사업자 :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9호, 2020.3.31. 시행) 및 2019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 (5) 위 (2), (3)에 따라 과세기간이 2020년 또는 2021년인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로서 다.(4)에 따른 2020년 또는 2021년 영업이익률 등의 지역·시설별 평균이 2019년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과세자료로 산정한 영업이익률 등에 가산한다.
- (6) 위 (4)에 따라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활용하여 산정한 영업이익률은 해당 지역·시설별 영업이익률 평균의 3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 그 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한다.

- (1) 인프라매출액의 지역·시설별 평균
 - (2)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의 지역·시설별 평균
 - (3) 신고매출액의 지역·시설별 평균
 - (4) 영업이익률 등의 지역·시설별 평균
 -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 매출액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통계자료
3.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사업 개시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영 제4조의1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정보를 통해 확인한 일수로 한다.
 4. 보정률은 100%로 한다.
 5.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지급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6. 대상자가 IV.에 따른 확인보상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산정한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해당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의해 재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7. 2.다.(1)부터 2.다.(5)까지의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는 등 보상금 산정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는 II.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본다.
 8. 2019년(2019년 중 사업을 개시한 자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업종,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 현저한 변화가 있어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입된 개업일이

아닌 다른 일자를 사업 개시일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일은 업종,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변화 시점과 신속한 보상금 지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IV. 지급 절차

1. 신속보상

가. 대상자가 영 제4조의6에 따른 신속지급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속보상을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의 재산정(再算定)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정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나.를 준용하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이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보상신청서로 한다.

3. 확인요청

대상자가 영 제4조의6에 따른 신속지급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인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나.를 준용한다.

4. 이의신청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대상자가 아님을 통지받은 자
- (2) 2.에 따른 확인보상 결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
- (3) V.1.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
- (4) 영 제4조의7제3항에 따른 환수 통지를 받은 자

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나.를 준용하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이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로 한다.

V. 보상금의 정산·환수 등

1. 대상자가 영 제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III.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2. III.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대상자가 영 제4조의7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한다.
3. 대상자가 이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영 제4조의7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에는 영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부장관이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III.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4. 대상자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은 자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III.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5. 3.에 따른 상계는 4.에 따른 상계에 우선한다.

VI. 보칙

1. 영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2.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6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보상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대표자)	[] 개인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시설분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대표자)	계좌주
	[] 법인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시설분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법인)	계좌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 신청인 (대표자)	[] 개인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의신청(다음중 택일) : [] 손실보상 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 금액, [] 손실보상금 감액·미지급,
[] 손실보상금 환수

상세내용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	-----------